

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 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4일

아 산 시 의 회 의 장



1. 조례안 목록

| 조례안 | 발의의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
|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안정근 의원 | |
|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이의상 의원 | |
| 아산시 떡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김희영 의원 | |
|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| 김희영 의원 | |
|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조미경 의원 | |
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
2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·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기한 : 2019년 10월 9일(수)까지

나. 의견 제출방법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 등
- 3) 서면, 우편, 전자우편(pys9799@korea.kr), 팩스(041-540-2135)로 제출
- 4) 의견 제출할 곳 : (우)31512/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
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(☎ 041-540-2905, 2628, 2705, 270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[붙임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(안) 내용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| | |